

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(공무직 대체인력) 채용 재공고

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팀 소속으로 구내식당 취사(조리사)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노동자(공무직 대체인력) 채용 **추가 응시접수 계획 및 일정 변경 사항**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7일
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

1. 추가접수 사유

- 응시접수 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어 원활한 채용 시험을 위해 재공고 및 추가접수를 실시합니다.
- **추가접수로 인하여 채용시험 일정이 변경되었으니, 변경사항(붉은색 표시)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 - ※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

2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근무지	채용 인원	계약(근무) 기간	업무 내용
실무사무원(취사_조리사) (휴직 공무직 대체 기간제노동자)	보건환경 연구원 (총무팀)	1명	2024. 5. 20. ~ 2024. 9. 7.	· 조리지시서에 따른 조리(취사) 업무 · 조리시설 위생관리 및 구내식당 청소 등

※ 피대체인력(휴직자) 조기복귀 시 복직일 전일로 계약기간 자동 종료

※ 피대체인력(휴직자) 휴직 연장 시 연장계약 체결할 수 있음

3. 채용일정

응시원서 추가접수 기간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	최종 합격자 발표
		일시	장소	
2024. 5. 7.(화) 14:00 ~ 5. 13.(월) 18:00	2024. 5. 14.(화)	2024. 5. 16.(목) (예정)	연구원 2층 세미나실	2024. 5. 17.(금) 시 및 연구원 홈페이지 공고

4. 근무조건

- 채용기간 : 2024. 5. 20. ~ 2024. 9. 7.
- 근무장소 : 보건환경연구원[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140번길 120(만덕동)] 구내식당
- 근무시간 : 주5일(월~금), 1일 8시간[08:00 ~ 17:00(휴게시간 1시간 별도)] 근무
- 급여수준 : 기본급 월 2,280,220원(세전 기준, 정액급식비, 가족수당 등 별도)
- 기타사항 : 4대보험 가입 등 기타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부산광역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에 따름

5. 응시자격

- 응시자 성별, 연령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자)
- 공고일 전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- 「부산광역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17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■ 「부산광역시 공무원직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17조(결격사유)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
- 직무 관련(취사, 조리) 자격증 등 소지자(미 구비시 서류전형 불합격)
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“조리” 분야 중 1개 이상 종목(조주 제외) 자격증 소지자
 - ※ 해당종목 : 조리(기능장), 한식·중식·양식·일식·복어조리(기능사 이상)
 -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(구 보건증) 결과 “정상”
 - ※ 2023. 10. 1.이후 검진결과에 한함
- 단체급식 가능한 자, 근무장소에 출퇴근이 가능하고, 근로 개시 예정일에 즉시 근로 가능하며, 필요시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휴일·연장·야간근로 등이 가능한 자

6. 채용방법

- 1차 : 서류전형
 - 응시자격에 맞는 제출서류(자격증 등) 구비여부 등 적격여부 심사
- 2차 : 면접시험
 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
 - ▷ (평정방식) 직무 관련 지식, 정신자세 등을 평정요소에 따라 ‘탁월·우수·보통·미흡’으로 종합평가
 - ▷ (평정요소) ① 기간제노동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직무 관련 지식 및 그 응용 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·논리성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

7. 최종합격자 결정

-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 : 다음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이 최고 우수한 자(‘탁월’의 개수가 많은 순, ‘탁월’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‘우수’의 개수가 많은 순, ‘우수’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‘보통’의 개수가 많은 순)로 결정
 - (불합격 기준)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‘미흡’으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‘미흡’으로 평정한 경우
-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

①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비율이 높은 순	② 의사상자 중 가점 비율이 높은 순
③ 제출한 필수 자격요건 자격증 중 등급이 높은 순(기능장>산업기사>기능사)	
④ 고령자 순(출생연도가 같을 경우 출생월일이 빠른 순)	

- 추가합격자 결정 :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응시자를 예비합격자로 운영
 - ▷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최종합격자의 채용(근로) 포기, 채용 결격사유 발생, 채용 후 취소,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 성적 우수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8. 가산점 적용 : 동점자 처리기준에서만 적용

-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가산점 적용 대상자로 지정된 자의 경우 면접시험 동점자 처리기준에 우선 적용[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인원의 일정비율(취업지원대상자 30%, 의사상자 등 10%)을 초과 불가하므로 본 채용에서는 없음]

구 분	근 거
취업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• 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
의사상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13조

9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원서교부 : 부산광역시 홈페이지(<http://www.busan.go.kr/nbincruit>),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(<https://www.busan.go.kr/ihe>) 등에 게시된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
- **추가접수기간 : 2024. 5. 7.(화) 14:00 ~ 5. 13.(월) 18:00**

○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E-mail 접수

- 방문접수 : 보건환경연구원 1층 총무팀(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140번길 120),
(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

- E-mail 접수 : (접수처) ajhrant@korea.kr

▷ (메일제목) 보건환경연구원 총무팀 기간제노동자(공무직 대체인력) 지원서 재중_성명

▷ 응시원서 등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 스캔파일 제출

▷ 오발송, 미도착 등 접수 오류는 개인책임으로 발송 후 아래 문의처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

▷ 온라인으로 제출된 응시원서 등 서류는 반환 불가

- 담당자의 서류접수 확인 등은 원서접수가 확인되었다는 표시이며, 제출서류의
구비 여부 및 무결성 여부에 대한 인정은 아님(서류전형 결과 확인 필요)

○ 접수문의 :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팀(☎051-309-2712)

10. 제출서류

① 응시자 기본정보 및 서류 목록표 [별지 서식 제1호]

② 응시원서 [별지 서식 제2호]

③ 이력서 [별지 서식 제3호]

④ 자기소개서 [별지 서식 제4호]

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[서식 제5호]

⑥ 주민등록표초본 : 공고일 이후 발급분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주소변동, 개명, 병역 전체 사항 포함)

⑦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의 중직무분야 **“조리” 분야 자격증 사본(조주 제외)**

- 해당종목 : ‘조리(기능장)’ , ‘한식·중식·양식·일식·복어조리(기능사 이상)’. 단, 시·군·구에서
발급하는 ‘조리사 면허증’은 필수자격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음

⑧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**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(구 보건증) 결과 “정상”**

- 2023. 10. 1.이후 검진결과에 한하여 인정[기준일 이전 검진내역의 (재)발급분은 미인정]

⑨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11. 유의사항

가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 등은 부산광역시
홈페이지(<http://busan.go.kr/nbincruit>) 「채용공고」 게시판 또는 부산광역시
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(<https://www.busan.go.kr/ihe>)에 별도 공고합니다.

나. 공고문 등의 안내·유의사항 미숙지,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, 기재사항 착오 및
누락, 미제출,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고,
시험주관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
- 다. 제출서류 중 발급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류(특히,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)는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라.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거나, 채용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마.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바.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대체인력 직원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 되면 고용관계가 소멸하며, 피대체인력(휴직자)의 조기복직시에도 계약기간은 조기복직일 전일로 종료됩니다. 다만, 피대체인력(휴직자)의 휴직 연장 시에는 휴직 연장기간에 맞는 변경계약(계약기간 변경)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- 사. “바” 항목 단서 조항 외의 재계약(계약연장 포함)이나 공무원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있어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.
- 아. 상기 유의사항 외의 사항은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및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」을 따릅니다.

■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(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)

1. 반환대상 : 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(단,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한함)
2. 반환방법
 -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서식 제6호]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0일 이내에 전자우편 ajhrant@korea.kr)으로 제출 및 접수여부 유선 확인(☎051-309-2712)
 - 보건환경연구원에 내방하여 직접 반환받거나 우편(수신자 부담 요금 발생)을 통해 반환
3. 참고사항
 -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,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
 -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
 - E-mail로 제출된 파일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팀(☎ 051-309-271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